【 12 】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9 .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양주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양주시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골자

가. 품목의 적용범위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중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해당함. (안 제3조)

나. 시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안 제4조).

다. 위원회는 상표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함.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은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1조)

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표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안 제 13조)

바. 상표사용신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승인한다 (안 제 14조)

사. 상표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 함. (안 제15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를 생산자단체 및 개인등에게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사용권"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상표사용자"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상품"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6. "상표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중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①양주시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농축산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의회의원, 지역농협, 축협, 관련학계전문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상표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용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 한다.

④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간사)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산품의 품질관리) ①공동브랜드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 이라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품질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동브랜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표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상표사용신청) ①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상표사용심사 및 승인)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 이라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용이 부적절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상표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③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기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상표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생산품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승인의 취소) ①시장은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교육 훈련 등) ①시장은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특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공동브랜드 홍보활동 및 사용상품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용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